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9,906,239	16,197,187
일반회계	462,298,820	13,868,965
특별회계	77,607,419	2,328,222
공기업특별회계	52,606,536	1,578,19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185,070	545,55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421,466	1,032,644
기타특별회계	25,000,883	750,02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41,860	34,2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8,800	21,264
주차장특별회계	6,936,421	208,093
수질개선특별회계	16,213,802	486,41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712,66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7,100,1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